【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-423호】

2026년도 제2차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연구원(기간제) 채용 공고

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연구원(기간제근로자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질 병 관 리 청 장

---

1. 선발개요

□ 채용 분야

응시분야	채용인원	채용구분	근무부서 (근무지)	담당업무
연구	1명	**기간제근로자 (휴직대체)**	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(충북 오송읍)	-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실무 - 생물안전 연구시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무

※ 위 공고문의 근무지와 담당업무는 최초 근무지 및 담당업무이며 질병관리청 인력수급 및 근무부서의 업무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와 담당업무, 근무처는 변경이 가능함

□ 자격 기준

채용등급	직무분야	응시자격
선임연구원	미생물학, 생물학, 보건학 등 관련 업무 전공자	1.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**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**으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.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**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**으로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

2. 근로 조건

연번	구 분	내 용
1	계약기간	**채용일 ~ '27. 12. 31. (육아휴직 대체)**
2	근무시간	주 40시간,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: 09:00 ~ 18:00 휴게시간 : 12:00 ~ 13:00
3	보 수	기본급 : 월 2,220,500원(1호봉) 정액급식비 : 160,000원 명절상여금 : 기본급(월)의 60%, 연 2회(설, 추석) 4대보험 가입

○ 근무시간은 부서 사정에 따라,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별도 근무 편성 가능

○ 기본급은 질병관리청 「2026년 연구원 보수기준표」에 따르며, 「질병관리청 공무직 등 근로자 보수체계」에 따라 시간외수당, 복리후생비, 성과상여금 등 지급 예정

○ 초임호봉 산정 시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의 유사경력 인정표와 호봉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호봉 획정 예정

○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」제29조 제4항에 따라 채용 후 3개월 간의 시용기간을 두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때 계약 종료할 수 있음

3. 공통 응시 자격 및 가점사항

□ 공통 응시 자격 (서류전형 예정일 기준)

○ 만 60세 미만인 자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공무원 임용시험령」 제51조 등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□ 가점사항 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○ 법정가점 대상자(증빙자료 첨부 필수)

구 분	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~10%

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할 때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

※ 법정가점은 응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함.
단,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일 때 채용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

4. 시험방법

1 서류전형

서류전형

○ 연구

계	평가항목			법정가점
	지원분야 경력	연구논문	분야 적합성	
100점 + 가점	20점	20점	60점	5점, 10점

-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(3배수) 결정
- 3배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(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)
-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

2 면접전형

면접전형

계	평가항목					법정가점
	정신자세	발전가능성	전문지식	성실성	논리성	
100점 + 가점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	5점, 10점

- 채용인원 범위 내에 든 경우라도, 심사위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,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평정된 자 중 예비 합격자(2배수) 결정 가능
-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중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나, 없을 시 면접 심사 재진행
- 평가점수의 각 항목은 최고 20점부터 최하 1점까지 부여함
- 법정가점은 채용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때에만 적용

5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모집공고 및 원서접수	'26. 11. 16.(월) ~ 11. 23.(월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 게시
서류전형	'26. 11. 24.(화)~	
서류합격자 발표	'26. 11. 30.(월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
면접전형	'26. 12. 3.(목)	-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(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
최종합격자 발표	'26. 12. 14.(월)	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임용 예정일	'27. 1. 4.(목)	- 신원조사 일정에 따라 임용 예정일(근무 시작일) 변경될 수 있음

6. 원서접수

○ 접수 기간: '26. 11. 16.(월) 10:00 ~ '26. 11. 23.(월) 14:00

○ 접수 방법: **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접수** (https://kdca.fairy.im)
(우편 등의 방법으로는 접수 받지 않음)

<질병관리청 채용시스템 QR>

※ 모든 서류는 질병관리청 연구원 전문 채용시스템 접수를 이용해 작성하거나 제출(시스템 접수 진행 시 첨부파일 등록)

7. 제출서류

1 공통 제출서류(필수 제출)

제출서류		비 고
1	응시원서 1부	▶ '채용 시스템' 에 직접 입력
2	자기소개서 1부	
3	성적증명서 1부	▶ 대학원, 학부 모두 파일 등록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) * 외국대학 졸업자는 관련 증빙서류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까지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
4	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	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첨부1)	▶ 자필 서명 후 '채용 시스템' 에 파일 등록
6	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첨부2)	
7	취업제한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첨부3)	
8	확인서 1부 (첨부4)	

2 해당자 제출서류

제출서류		비 고
1	학위논문 요약서 1부 [첨부5]	▶ '채용시스템'에 **직접 입력**
2	최근 연구실적 [첨부6]	▶ '채용시스템'에 **연구실적 첨부파일 등록 및 연구논문 입력** * 해당 첨부 서식 PDF 파일로 업로드 후 연번에 맞게 연구논문 작성 제출
3	경력(재직) 증명서 1부	▶ '채용시스템'에 **파일 등록** (**담당업무** 및 **발급자 연락처 필수 기재**) *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건 * 담당업무 미기재 및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직무 분야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, 해당 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* 외국기업 경력 증명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의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,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까지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
4	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	주민등록초본은 병역 사항 기재
5	등록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증명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	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 필) 첨부

8. 안내 및 유의사항

○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재공고할 수 있음

○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
○ **공통 제출서류 서명·날인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**하여야 함

○ **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서류**(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등)의 경우 **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제출**하여야 하며, **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까지 공증본을 제출**하여야 함

○ 시험과 관련하여 미확인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,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

○ 추후,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

○ 채용시스템으로 제출한 응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

○ 시험 시행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기타 문의처 : 연구원(기간제근로자) 채용담당자(☎043-719-8055)

[첨부1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6호서식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및 관리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휴대폰번호, 전자우편, 학력 · 경력 · 자격 · 면허사항, 외국어성적 · 논문 · 수상실적 등 자격 및 우대요건 등 채용 시 제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해당하는 사항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**준영구** ※ 다만, 채용 불합격 시에는 채용 공고일 기준 3년간 보관 후 폐기

※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 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**[ 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**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2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11호서식]

공무직 ·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[ ]공무직 [ ]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□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□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3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12호서식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[ ]에 체크>

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*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	[ ] 해당 [ ] 비해당
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비해당: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해당: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	[ ] 해당 [ ] 비해당
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	[ ] 해당 [ ] 비해당
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	[ ] 해당 [ ] 비해당
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	[ ] 해당 [ ] 비해당
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	[ ] 해당 [ ] 비해당
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 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	[ ] 해당 [ ] 비해당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	[ ] 해당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	[ ] 해당

※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년 월 일

지 원 자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4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13호서식]

확 인 서

응시분야	응시등급	생년월일	성명

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 채용 관련 합격취소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.

1. 내 ·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강요 및 청탁한 경우

2.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

3.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

4. 대리 면접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

5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

6. 병역, 가점 등 증빙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· 변조한 경우
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

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의 채용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것에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5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4호서식]

학위논문 요약서 [ ]석사 [ ]박사

응시분야	응시등급	생년월일	성명

학위개요	○ 학위 논문제목 ▪ 한글명 : ▪ 영문명 : ○ 심사 년월일 : ○ 세부 전공 :

주요 내용 요약

Ⅰ. 연구 목적

1.

가.

1)

가)

(1)

(가)

Ⅱ. 연구 내용

Ⅲ. 연구 결과의 활용도

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
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작성 요령

1. 학위 건별로 전체 논문 주요내용에 대해 A4용지 3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
2.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한글로 번역하여 작성
3. 논문 표지 및 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제출
4. 글자체 굴림체, 글자크기 13포인트, 줄간격 160%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첨부6]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[별지 제5호서식]

연 구 실 적

□ 연구논문 : 건 (공고일 기준, 5년 이내 연구논문(학위논문 제외)에 한함)

연번	제목	연구자 (참여자수,역학)	게재지명 (권,호)	발표(게재) 연월일	인터넷 확인 가능 URL주소	비고

작성 요령

1. 연 구 자 : 논문에 기재된 참여자 인원수와 본인의 역할을 기재
   - (예시) 1인, 2인(주저자), 2인(제2저자), 3인(교정저자), 교신저자 등
2. 게재지명 : 논문을 게재한 저널지명을 기재(저널명, 권, 호, 발행연월일)
3. 비고에 SCI, SCIE, KCI 등재 논문 해당 여부 기재(외국어의 경우 초록번역본 제출)
4. 증빙자료 별도 첨부(건당 A4용지 2매이내)
   - 저자, 논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초록 포함된 첫페이지 제출
     1) 확인용(원본) 1부
     2) 블라인드 심사용(본인 이름 포함 나머지 저자명, 소속 및 교신저자 정보 등 삭제) 1부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